

수산질병관리원 [] 개설 신고서
[]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면허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산질병 관리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인		
수산질병 관리사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또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장비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 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수입증지는 뒤쪽에 붙임)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없음

작성요령

수산질병관리사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수수료

※ 수입증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